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190호

나. 발 의 자 : 권수정 의원(찬성자 23명)

다. 제안일자 : 2021년 2월 5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2. 제안이유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이 제정됨.
- 이에 따라 노동자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조례 적용 대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노동자’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2).
- 나.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제2호).
- 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며,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개정안의 발의 배경

- 최근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참사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소홀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음.

- 이에 따라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2021.1.26.) 시행을 앞두고 있음(2022.1.27.).
-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민간기업이나 단체, 법인까지 확대하여 민간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다. ‘노동자’의 정의 확대(안 제2조제3호)

- 개정안은 조례상의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인
 -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배달종사자, ▶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p> <p>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p>

- 개정안과 같이 고용형태나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정의하게 되면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필수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의 새로운 형태의 노동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가능해지는 입법효과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대상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의 형식(도급, 용역, 위탁 등)이나 도급 단계에 관계없이 사업 수행의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산업재해의 보호대상으로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노동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정의와 개정안의 정의가 서로 달라 통일적인 법적용이 어렵다는 점과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보다 확장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¹⁾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어 이를 고려한 입법적 판단이 필요함.

< 서울시 조례 상 ‘노동자’에 대한 정의 >

조례명	“노동자”에 대한 정의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조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특별시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적용 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

라. ‘중대산업재해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의2, 안 제6조제2항제2호)

-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동일하게 ‘중대산업재해’를 정의하고 (안 제2조제4호의2),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제2호).

1) 의안번호 제1020호. 재의요구일(2019.9.26.).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신 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4의2.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p>
<p>제6조(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① (생 략)</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생 략)</p> <p>2. 노동환경 취약분야 <u>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지원사업</u></p>	<p>제6조(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u>-----</p>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p>「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p> <p>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p> <p>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p> <p>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p>
--

- 그러나 ‘중대산업재해’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022.1.27.) 이후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과 조례의 시행일에서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됨.
- 또한 ‘중대산업재해’는 광의의 산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중대 산업재해를 특정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신중한 입법적·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마. 조례 적용 대상의 확대(안 제3조)

-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현행 서울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내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추가하여 사실상 모든 민간기업·법인·단체까지 확대하였음.

현행	개정안
<p>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p> <p>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p> <p>2.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과 그 자회사</p> <p>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p>	<p>제3조(적용대상) -----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과 그 자회사</p> <p>2. 제1호를 제외한 시 관내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p> <p><삭 제></p>

- 개정안과 같이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민간기업이나 단체, 사업주 등에게도 시장의 책무(제5조), 노동안전조사관의 지도점검(제7조), 사업주의 협조(제8조) 등의 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입법·정책적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까지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시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지방자치법」상의 법률유보의 원칙²⁾과 「행정규제기본법」³⁾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추가(안 제10조의2 신설)

- 개정안은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 등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 등에 입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음.
- 이는 서울시 용역수행업체의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례 위반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2)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이미 같은 내용을 규정⁴⁾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에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요구됨.

사. 종합의견

- 개정안은 최근 산업구조의 재편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노동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며, 적용대상을 민간기업 등까지 확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그러나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는 법률의 시행시기 미도래와 대통령령 등의 후속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조례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민간기업 등까지 규율대상을 확대하여 현행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조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의 용어가 조례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조례의 해석과 적용시 혼란과 의문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적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8

4)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1.~2.(생략)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참고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

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의 업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